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조흥규
대한민국 154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2, 2
02호

발송일 (일/월/년) 2019년 08월 26일 (26.08.2019)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18pct02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16068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12월 18일 (18.12.2018)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2월 05일 (05.12.2018)

국제특허분류(IPC)
B24C 5/04(2006.01)i, B05B 13/02(2006.01)i, B05B 15/658(2018.01)i

출원인
이세창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9년 08월 26일 (26.08.2019)

심사관
이세경
전화번호 +82-42-481-8740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1. 추가수수료납부요구서(서식 PCT/ISA/206)에 대응하여 출원인은 규정된 기간내에
 -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수수료 및 이의신청료(해당하는 경우)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의신청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본 기관은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 3. 당해 기관은 PCT 규칙 13.1, 13.2, 13.3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본 국제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다수의 발명군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1군 발명: 청구항 1-5는 샌드블라스트 노즐의 연결구조에 관한 것이고,

제2군 발명: 청구항 6-10은 샌드블라스트 노즐 연결용 커넥터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청구항 간에는 PCT 규칙 13.2에서 규정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군 발명과 제2군 발명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습니다.

- 4. 따라서 본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다음 부분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부분

청구항 _____ 에 관련된 부분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1-5, 10	있음
	청구항	6-9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CN 201428882 Y (SHANGYU XINHUA ELECTRICAL APPLIANCE CO., LTD.) 2010.03.24
- D2: KR 10-0408930 B1 (김태승) 2003.12.11
- D3: JP 2004-276137 A (KOEI K.K.) 2004.10.07
- D4: US 5036631 A (STOLTZ, WOODROW W.) 1991.08.06
- D5: KR 20-0365026 Y1 (이방수) 2004.10.19
- D6: JP 2017-219054 A (ISUZU MOTORS LTD.) 2017.12.14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5

청구항 1의 노즐관의 외부에 끼워지는 췌기부재의 후단에 맞닿게 되는 커버관을 포함하며, 커버관은 노즐관에 완전히 끼워질 때 췌기부재의 후단 경사면을 가림으로써 췌기부재가 췌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블라스트 노즐의 연결구조인 것은 인용문헌들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 2-5는 청구항 1의 종속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1-5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1) 청구항 5에 기재된 "상기 가림부재"는 앞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5는 PC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청구항 8에 기재된 "상기 썬기안내공"은 앞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8는 PC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청구항 9에 기재된 "상기 썬기부재고정구"는 앞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9는 PC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청구항 1은 샌드블라스트 노즐의 연결구조에 관한 것이고,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8은 샌드블라스트스 노즐 연결용 커넥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8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PC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본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는 청구항 8이 청구항 6을 인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5) 청구항 9에 기재된 "상기 회전지지대(15c)"는 "상기 회전지지대(65c)"의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9는 PC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청구항 10에 기재된 "가이드공유입구(23)"은 "가이드공유입구(73)"의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10은 PC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2. 청구항 6-10

2.1. 청구항 6

청구항 6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일측으로는 플렉시블호스(10)의 단부가 끼워지도록 홀을 제공하는 록너트(2) 및 연결관(1); 강성관(14)을 연결하기 위하여 연결관(1)의 타측에 마련되는 강성관(14) 연결부; 및 록너트(2) 및 연결관(1)에 삽입된 플렉시블호스(10)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썸부재(6)를 구비한 호스연결부(5)를 포함하는, 강성관(14)과 플렉시블호스(10)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개시되어 있습니다(페이지 3, 라인 8 - 페이지 4, 라인 22 및 도면 1-3 참조).

다만, 청구항 6의 커넥터가 샌드블라스트 노즐 연결용인 것(차이점 1); 및 호스고정부가 베이스의 벽체에 노즐의 연장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마련되는 썸안내공, 썸안내공에 삽입되는 썸부재, 및 썸부재의 후단에 힘을 작용하여 썸부재의 뾰족한 선단부가 고무호스를 파고들어 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썸부재고정구를 포함하는 것(차이점 2)이 인용문헌 D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구성 중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의 커넥터(페이지 3, 라인 8 - 페이지 4, 라인 22 및 도면 1-3 참조)를 샌드블라스트 노즐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으며, 차이점 2는 인용문헌 D2의 가요관(45)이 커넥터(41)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썸부(W)를 구비하고, 너트의 내측에 배치되는 콜레트(43) 및 가요관이 삽입되는 구멍이 형성되며, 조임에 의한 압착력이 콜레트(43)의 누름부(43d)에 작용하여 썸부(W)가 가요관(45)에 파고들어 가요관을 고정하는 너트(42)를 포함하는 가요관 연결용 조인트(페이지 3, 라인 51 - 페이지 4, 라인 46, 청구항 1 및 도면 4-5 참조)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6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2.2. 청구항 7-9

청구항 7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2의 조임에 의한 압착력이 콜레트(43)의 누름부(43d)에 작용하여 썸부(W)가 가요관(45)에 파고들어 가요관을 고정하도록 하는 너트(42)(페이지 4, 라인 38-43 및 도면 4-5 참조)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8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2의 가요관을 커넥터로부터 분리시, 너트(42)를 풀고, 누름부(43d)를 가요관(45)의 중심 방향을 향해 누르면, 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너트 내부에 배치된 콜레트(43)의 췌기부(W)가 가요관(45)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탈되는 구조(페이지 3, 라인 44-46, 청구항 1 및 도면 4-5 참조)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9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2의 가요관을 커넥터로부터 분리시, 너트(42)를 풀고, 누름부(43d)를 가요관(45)의 중심 방향을 향해 누르면, 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췌기부(W)가 가요관(45)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탈되는 구조(페이지 3, 라인 44-46, 청구항 1 및 도면 4-5 참조)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7-9는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참고: 본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는 청구항 8이 청구항 6을 인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3. 청구항 10

청구항 10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0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10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